

# “기업인 환경선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 기업내의 환경관련기구와 조직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1. “기업인 환경선언”의 기대  
온 지구촌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관련하여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준비로 술렁대는 와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제 20회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기업인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기업인 환경선언”이 발표되었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환경문제가 여론의 초점이 되었고(그런 이유가 충분하였지만...) 사실 그간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기업이라는 일반고정관념이 팽배하였을 뿐 아니라 또 상당수의 기업은 지금까지 환경분야의 투자에 인색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인식되어진 시점에서 발표된 “기업인 환경선언”은 시기적으로 모두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하였고 따라서 이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만...) 실제적인 수행과 실천에 따른 효과를 나타낼 것 없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기업인의 책



張 焜 榮  
(본 연합회 회장)

**“기업인 환경선언”은 선포된 이상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7개항목으로 된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우선 이를 현실적인 수행체제로 갖추기위해 기업내의 환경기구와 조직이 체계화되고 조직화 되어야 된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임과 자성이 담긴 전문과 7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대로를 너무나도 잘 반영한 것이어서 선언내용대로만 실천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 환경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설레게 된다.

## 2. 기업의 환경관리

그간 기업에서의 환경보전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종방류부분에서 법의 행정적인 범주안에서 인허가적인 수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투자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반하여 소비분야로 인식되어 환경인력은 기업에서 소외시되는 편이었고 그나마 환경부서 또한 생산과는 무관한 별개부서로서 어떤때는 지도단속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지곤 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그 실천 범주가 상당히 광범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원료투입 부터 각종 생산공정라인 이와 관계되는 utility까지 환경개념이 밀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료의 적정투입, 생산

성향상, 공정관리개선으로 제품수율향상, utility상의 절약(절전, 절수 등 에너지절감, 재활용 etc)등으로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저감을 유도하게 되면 제조원가의 저하는 물론 처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환경보전에 기여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곧 기업에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부서뿐 아니라 전사원의 환경요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내의 환경조직체계가 제도적 또는 자율적으로 확립되어야 될 것이다.

### 3. 기업인 환경선언의 실효성 재고

“기업인 환경선언”은 선포된 이상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7개 항목으로 된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우선 이를 현실적인 수행체제로 갖추기위해 기업내의 환경기구와 조직이 체계화되고 조직화 되어야 된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래야만 선언의미 이상의 실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합회에서는 그간 꾸준히 기업내에 전담부서(최소한 3종 이상업체)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 왜냐하면 전담부서가 설치된 회사는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가 잘되고 환경문제가 타에 비해 적었다는 것은 행정관청 뿐 아니라 자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차원 도약해야 된다. 전담부서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 기업내 환경조직과 기구의 법제화 내지는 제도화를 고려해야 할 단계인 것이다. 국가의 환경정책수행도 각부처의 장으로 된 환경보전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위원은 각부처장관급)가 있듯이 작게는 기업내에서도 경영자 또는 공장장급을 총책임자로 하는 각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환경기구를 구성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각분야에서 책임을 느끼면서 원활한 환경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서는 실질적인 수행부서이지만 상기의 조직에서는 환경부서장이 간사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형태로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회사

내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정립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입법단계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4. 선언과 책임

“기업인 환경선언”은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 없는 실천의 책임과 의무 또한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라건데 이의 실천이 잘 이루어져 절로 국가환경보전에 크게 부응됨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환경경제추세에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도 없이 고기 키우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